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
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추경호 (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중

1. 의결주문

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
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관세법」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
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
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
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
바,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닭고기, 오리 부화용 수정란, 대
파 및 무에 대하여 2023년 6월 30일까지, 감자칩 제조용 감자에 대하여
2023년 11월 30일까지 각각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입법예고(2023. 4. 5. ~ 4. 13.) 결과, ○○○ ○○ ○○

2023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

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

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본칙 중 “별표 1부터 별표 8까지”를 “별표 1부터 별표 10까지”로 한다.
별표 9 및 별표 10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)

- ①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수입 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.
- ②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수입 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.

관세율표 번 호	호 소호	품명	규격 등	세율 (%)	한계수량
0207		제0105호의 가금(家禽)류의 육과 식용 설육(屑肉)(신선한 것, 냉장 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)			
0207	1	닭[갈루스 도메스티쿠스(<i>Gallus domesticus</i>)종으로 한정한다]의 것			
0207	12	절단하지 않은 육(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)		0	30,000톤
0207	14	절단육과 설육(屑肉)(냉동한 것으 로 한정한다)			
		1. 절단육		0	
		2. 설육(屑肉)		0	
		나. 기타		0	
1602		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·설육(屑肉)·피·곤충			
1602	3	가금류(家禽類)로 만든 것(제0105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)			
1602	32	닭[갈루스 도메스티쿠스(<i>Gallus domesticus</i>)종의 것으로 한정하 다]으로 만든 것		0	

0407		새의 알(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한 것, 보존처리하거나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)				
0407	1	부화용 수정란				
0407	19	기타	오리 부화용 수정란	0		10톤
0703		양파·샬롯(shallot)·마늘·리크(leek)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(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)				
0703	90	리크(leek)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	대파	0		
0710		냉동채소(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찌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)				5,000톤
0710	80	그 밖의 채소 2. 기타	대파	0		
0712		건조한 채소(원래 모양인 것, 절단한 것, 얇게 썬 것, 부순 것,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,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)				

0712	90	그 밖의 채소와 채소류의 혼합물 1. 그 밖의 채소 다. 파	대파	0		
0706		당근·순무·셀러드용 비트(beetroot)·선모(仙茅)·셀러리액(celeriac)·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뿌리(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)				
0706	90	기타 1. 무		0		수입 전량

신·구조문대비표

[별표 10]

2023년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

관세율표 번호		품명	규격 등	세율 (%)	한계수량
호	소호				
0701		감자(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 로 한정한다)			
0701	90	기타	감자칩 제조용	0	13,000톤

현행	개정안
「관세법」 제71조제1항에 따라 관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그 세 율 및 한계수량은 <u>별표 1부터 별 표 8까지와</u> 같다.	-----

	----- <u>별표 1부터 별표 10까지 와</u> -----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	
연 락 처	(044) 215 - 4433